

##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4월 22일부터 치매공공신탁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실시 -
-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
-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 예방 및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용 사례(예시) >

- **(상황)**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이며, 떨어져서 사는 자녀가 1명(C)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예금 등 노후 자산을 생활비·의료비로 제때 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 C씨는 직접 곁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① **(신청·의뢰)** 어느 날 A씨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고,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A씨를 의뢰하였습니다.
- ② **(접수·상담)** 이후 지역본부에서 C씨가 동행한 상태에서 A씨와 B씨를 방문하여 재산 내역, 주변에 도움 사람이 있는지 여부, 원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합니다.
- ③ **(수립·계약)** 지역본부 상담사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에는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과 범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가 작성됩니다.
- ④ **(관리·지출)** 재산은 배분계획에 따라 집행되며, C씨는 부모님의 재산이 부모님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하면서도 혹시 모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⑤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은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연속수익자인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이 이어지며, B씨가 사망한 후에는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되어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됩니다.
- **(기대효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비상금 저축 등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치매 가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피해 위험을 감소시켜 치매 가구의 경제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2일(수)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 ※ (참고)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

구분	주소	시범사업 관할지역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서울(강북), 경기 북부(김포, 양평 포함), 인천(강화), 강원(철원)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서울(강남), 경기(하남, 가평), 강원(철원 제외)
경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경기(서울북부·서울남부 관할제외), 인천(강화 제외)
대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대구, 경북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부산, 울산, 경남

[ 사업 개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 (정의)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어 취약계층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제도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발전되었으며 일본은 부재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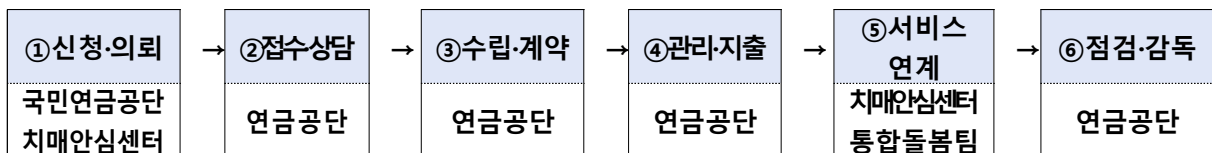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 조기발병(65세 미만)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 지원(무료)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 [ 이용방법 및 절차 ]



### ① 신청·의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된다.

## ② 접수·상담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 우선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자택 등 희망장소에 방문하여 의료 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 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 ③ 수립·계약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 (재정계획) 대상자 상태, 상황, 선호도에 맞는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위탁재산 월별 지출계획. 지원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

계약서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붙임 4 주요 Q&A 참조) 계약 작성 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등 주요사항을 결정,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사람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증빙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특별지출 시 증빙자료 구비 등 배분계획 집행을 지원하는 사람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 ④ 관리·지출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가정법원에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민법상 절차 수행

## ⑤ 서비스 연계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하여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 ⑥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내역 등을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연락하면 된다.

## [ 달라지는 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별 자금 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둘째,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진다. 복잡한 재산관리를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지원한다. 정기적인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을 예방해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재산관리 안전망이 강화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단순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착수하고,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 재산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절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 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  
 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리플릿  
 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로 달라지는 점  
 4. 주요Q&A  
 5.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장홍준	(044-202-3538)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찬석	(063-713-7440)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담당자	차 장	이재현	(063-713-7441)
	소통홍보실	책임자	부 장	장원주	(063-713-5430)
	언론홍보부	담당자	차 장	김성한	(063-713-5435)
<공공후견>	중앙치매센터	책임자	팀 장	최선영	(02-6260-3160)
	치매공공후견팀	담당자	변호사	문은정	(02-6260-3161)



치매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이용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이용 절차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 나를 지키는 선택  
내 재산은 오직 나를 위해.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가족도 안심하는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했던 가족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 돌봄종사자의 투명한 금전지출  
치매 어르신과 돌봄종사자 모두 투명하고 안전하게 재산을 지출합니다.

**Q&A**

- Q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 10억)
-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범사업에 이용하실 경우 무료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르신의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임의로 지출되진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재산을 지출, 점검하고, 신탁재산은 수익자(치매 어르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Q 지출계획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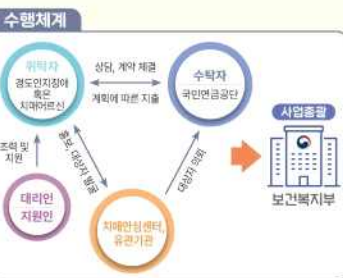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어떻게 진행되나요?**



- 01 상담 신청**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신청합니다.
- 02 계획 세우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상황, 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 0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재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04 서비스 이용**  
요양, 의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점검합니다.



**어떤점이 좋을까요?**



- A씨 (홀로 사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 됩니다. 미리 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B씨 (치매어머니를 둔 자녀)**  
멀리 사는 부모님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걱정됩니다.  
 ↳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여 경제적 학대, 사기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 C씨 (사실종사자)**  
어르신들의 금전 관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지만, 치료비 장산이나 잔여재산 처리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시설은 돌봄에 집중 할 수 있게 됩니다.
- D씨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의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며 생기는 보호자들의 의심과 오해가 걱정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여도 안심하고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됩니다.
  - 상황에 맞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노후와 생활을 돕습니다.
- **(가족)** 혼자 감당하던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 공공기관이 함께 재산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제적 학대, 부정사용 위험을 예방합니다.
- **(지역사회)**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 경제적 학대와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취약 어르신 보호체계가 강화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에 기여합니다.
- **(국가)** 재산관리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재산관리로 확대되는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불필요한 사회보장급여 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됩니다.
-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를 문의해보세요!**

<p>“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재산은 안전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p> <p>“나를 위한 치료, 요양,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도움받을 수 없을까요?”</p>	<p>“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 멀리 떨어져 살다보니 돈 관리가 걱정돼요.”</p> <p>“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p>	<p>“독거 치매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통장과 현금을 자주 분실하셔서 재산관리가 걱정됩니다.”</p> <p>“부부 모두 치매를 앓고 있어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p> <p>“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p>
--	--	--

질의	답변
1. 후견과 신탁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로 <b>법정후견</b>(성년, 한정, 특정), <b>임의후견</b>으로 구분</li> <li>○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b>신탁계약</b>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b>수탁자</b>(신탁회사 등)에 맡기고 정해진 목적대로 <b>관리·운용·분배</b>하는 제도</li> </ul>
2.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li> </ul>
3.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 필요</li> <li>○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b>간이한 절차</b>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li> </ul>
4. 치매환자 대신 후견인이 체결하게 되는데, 재정 지원계획 수립 시 치매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충분히 반영 가능</li> </ul>
5. 지원인과 대리인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 건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증빙자료 구비 등 특별지출 신청지원 등 - 인근에 도와줄 수 있는 자로서, 재가환자라면 친족, 후견인이고 시설 입소자라면 시설 종사자가 대표적</li> <li>○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보증금 반환청구 등 -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자로서, 대부분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것이며, 적절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연계하여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담 과정에서 주변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b> 사람을 고려하여 신탁계약서에 지원인과 대리인을 본인 또는 후견인의 <b>의사</b>에 따라 <b>지정</b></li> <li>- 이 과정에서 <b>동일한 사람</b>이 지원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b>겸할 수 있음</b></li> </ul>
<p>6. 계약의 기간은 선택이 가능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b>위탁재산을 안전한 보관</b>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지출 지원이 <b>목적</b></li> <li>○ 목적의 <b>취지, 치매 질환(퇴행성 등)의 특성</b>을 고려, 계약의 기한 <b>별도 정하지 않음</b></li> </ul>
<p>7. 계약 시 수립된 재정 지원계획은 <b>중도에 변경</b> 가능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원 입소 등 대상자의 변화된 <b>상황이나 욕구</b>에 따라 <b>재정지원계획 변경</b> 가능</li> <li>○ 다만, 해당 계획 변경이 치매환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등을 <b>확인</b>하기 위해 <b>치매안심재산관리 위원회 심의</b>가 필요</li> </ul>
<p>8. 본인 재산을 지출하는데 왜 모니터링을 하거나 특별지출 신청·심의를 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본인 재산이 제3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b>하기 위한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지출 건 중 타인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은 <b>증빙자료를 확인</b>하고,</li> <li>- 특별지출은 <b>경제적 학대의심 등 부적절한 제3자 사용목적 여부</b> 등을 심의 후 배분</li> </ul> </li> </ul>
<p>9.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선별(2주), 상담·수립(4주) 등 <b>단계별 예상 소요 일수</b>를 고려할 때 소요되어 <b>최소 한 달 이상</b> 걸릴 것으로 예상</li> <li>-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b>심판청구</b>가 필요할 경우 <b>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b>이 추가 소요</li> </ul>
<p>10.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인건 아닌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b>부당한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b>로부터 '<b>보호</b>'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li> <li>○ 전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의 <b>자발적인 신청과 동의</b>에 의해서만 <b>계약이 체결</b>되며, 재산 내역 정기적 알림 등 <b>투명하게 운영</b>될 예정</li> </ul>

## 붙임5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업무 흐름	세 부 내 용	주 체
서비스 홍보 대상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홍보(리플렛 배부, 옥외광고, 기고 등)</li> <li>• 주요 기관(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중심으로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자 발굴</li> </ul>	치매센터 (중앙, 기초 등) 요양협회 연금공단 지사
상담·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보유정도, 거주환경 등 각종 정보 조사 및 초기상담</li> <li>• 개별 욕구 및 의사결정능력 수준 등 확인</li> <li>• 친족, 후견인 등 보호자와 협의</li> </ul>	연금공단 지역본부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신탁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된 정보와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li> <li>•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지원인과 대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입원·진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등 주요사항을 결정,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자로 친족, 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등이 후보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증빙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특별지출 시 증빙자료 구비 등 배분계획 집행을 지원하는 자로 친족, 시설종사자 등이 대표적</li> </ul> </li> <li>• 재정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위탁자(수익자)와 수탁자 간 계약 체결 및 본부의 계약서 적합성 심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기본계약서와 개별사항이 적시된 개별 계약서 작성</li> <li>** 노노가구인 경우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 가능(서비스 단절 방지)</li> </ul> </li> <li>• 대상자가 치매환자로 확인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신탁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 선임</li> </ul>	연금공단 지역본부 본부
위탁재산 지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공단이 생활비, 요양비 등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이 타인계좌 이체 등 월별 지출내역 보고</li> </ul> </li> <li>• 특별지출, 계약철회 등 주요사항 결정 시 연금공단 산하 위원회가 심의 후 배분</li> <li>• 사망 후 잔여재산을 정산하여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li> </ul>	연금공단 지역본부
서비스 연계 점검·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에 의뢰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li> <li>• 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월별 집행 내역 점검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li> <li>•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하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지출 확인 시 불시점검</li> </ul>	연금공단 지역본부